

제 3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5조에 의하여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4년 3월 29일 (금) 오후 05시 00분

2.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, 303호(삼평동, 씨즈타워)

3. 회의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

- 영업 보고 : 2023년 사업 현황 보고의 건

나. 결의안건

- 제 1 호 의안 : 제 3 기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(안)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

[별첨1 참조]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[별첨2 참조]

제3호 의안 : 사내이사 신익수 중임의 건 [별첨3 참조]

제4호 의안 : 이사보수지급한도 승인의 건 [별첨4 참조]

제5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[별첨5 참조]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에 비치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경우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,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된 위임장, 주주 신분증 사본)을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직접행사 : 신분증
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혹은 서명)[별첨6참조],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대리인의 신분증

2024년 03월 14일

(주)엘립스진단 대표이사 이 정 규 (직인생략)

[별첨 1]

제 1 호 의안 : 제 3 기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(안)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

1) 재무상태표

(단위 : 원)

과목	제 3 기	제 2 기
자산	950,838,492	328,496,504
1. 유동자산	687,749,821	86,842,344
2. 비유동자산	263,088,671	241,654,160
부채	43,940,814	100,032,920
1. 유동부채	20,781,478	100,032,920
2. 비유동부채	23,159,336	-
자본	906,897,678	228,463,584
자본금	230,786,000	213,286,000
주식발행초과금	974,015,500	7,983,000
기타자본항목	2,238,840	-
이익잉여금(결손금)	(300,142,662)	7,194,584

2) 손익계산서

(단위 : 원)

과목	제 3 기	제 2 기
1. 영업수익	100,000,000	42,750,000
2. 영업비용	418,570,621	28,981,032
3. 영업이익(손실)	(318,570,621)	13,768,968
4.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(손실)	(306,687,836)	12,864,300
5. 법인세비용	649,410	-
6. 당기순이익(손실)	(307,337,246)	12,864,300
7. 기타포괄손익	-	-
8. 당기총포괄손익	(307,337,246)	12,864,300

3) 결손금처리계산서

(단위 : 원)

과 목	제 3 기		제 2 기	
1. 미처리결손금		(300,142,662)		7,194,584
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	7,194,584		(5,669,716)	
당기순이익(손실)	(307,337,246)		12,864,300	
결손금처리액			-	
자본잉여금이입액			-	
2.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		(300,142,662)		7,194,584

1) 제3기 결손금 처리예정일은 2024년 3월 29일이며, 제2기 결손금 처리확정일은 2023년 3월 31일입니다.

[별첨 2 참조]

제 2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회사는 아래와 같이 정관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.

1. 주식매수선택권의 벤처기업 특례법 반영 및 조문 정비 : 정관 제 11 조,
2. 상장회사 특례규정 삭제 : 제 25 조
3. 관계 법령 상세 기재 : 제 35 조, 제 53 조
4. 이사의 의무 및 결원이 생긴 경우의 기재 : 제 37 조, 제 39 조
5. 기타 : 부칙 신설

신구조문 대비표		
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<p>제 11 조(주식매수선택권)</p> <p>① 회사는 <u>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<u>회사의 설립·경영과 영업신장,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이사·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·감사 또는 피용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 조 3 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,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, 대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한다. 다만,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</u></p> <p>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「상법」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<u>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·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 11 조(주식매수선택권)</p> <p>①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(이하 “벤처기업법”)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·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(이하 “주식매수선택권”이라 한다)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.</p> <p>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사의 임직원 2.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3.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제공한 외부 전문가(이하 ‘외부전문가’라 한다) <p>④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자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상법」 제 542 조의 8 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. 「상법」 제 542 조의 8 제 2 항제 6 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. 그 밖에 “벤처기업법” 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 	<p>벤처기업 특례법 반영 및 조문 상세항목 정비</p>

<p>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<u>보통주식(또는 종류주식)</u>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<u>보통주식(또는 종류주식)</u>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	<p>⑥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<u>신주</u>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.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.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	
<p>(신설)</p>	<p>⑦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.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	
<p>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.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행한 경우 	<p>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.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.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.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행한 경우 	
<p>제 25 조(소집통지 및 공고) ①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, 장소,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 주(단 자본금이 10 억 미만 일 경우 10 일)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「상법」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 그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회사의 본 지점, 명의개서대행사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 25 조(소집통지 및 공고) ①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, 장소,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 주(단 자본금이 10 억 미만 일 경우 10 일)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②(삭제)</p>	<p>상장회사 특례규정 삭제</p>
<p>제 35 조 (이사의 수)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둘 수 있다.</p>	<p>제 35 조 (이사의 수)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둘 수 있으며, 그 외에는 관계법령(상법 제 54 조의 8 및 동법시행령 제 34 조 1항 1호 등)의 규정에 따른다.</p>	<p>관계법령 상세기재</p>

<p>제 37 조(이사의 임기)</p> <p>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</p> <p>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 37 조(이사의 임기 및 보선)</p> <p>①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</p> <p>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③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제 35 조(이사의 수)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결원이 생긴 경우의 기재</p>
<p>제 39 조(이사의 의무) (①~③중략)</p>	<p>제 39 조(이사의 의무) (①~③중략)</p> <p>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이사의 의무 추가 기재</p>
<p>제 53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제 447 조의 2 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 53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</p> <p>①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 및 제 447 조의 2 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상법 조항 상세 기재</p>
<p>(신설)</p>	<p>부 칙 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4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신설</p>

[별첨 3]

제 3 호 의안 : 사내이사 신익수 중임의 건

1. 후보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추천인·최대주주와의 관계·사외이사후보자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신익수	1975-09-22	사내이사	해당사항 없음	이사회

2. 후보자의 주된 직업·세부경력·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
주된 직업	세부경력		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
	기간	내용	
(주)엘립스진단 사내이사	'21.07 ~ 현재	(주)엘립스진단 사내이사 (CTO)	없음
	'12.09 ~ 현재	송실대학교 화학과 조교수/부교수	
	'18.09 ~ '19.08	Univ. Of Massachusetts at Lowell, Exchange Researcher	
	'09.03 ~ '12.08	서울대학교 BK 조교수/박사후연구원	
	'08.08 ~ '09.02	(주)삼성토탈 과장	
	'07.07 ~ '08.06	Univ. Of Texas at Austin, Research Fellow	

3.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·부실기업 경영진 여부·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
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없음	없음	없음

[별첨 4]

제 4 호 의안 : 이사보수지급한도 승인의 건

1. 이사의 수 ·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

1) 당 기(4기)

이사의 수 (사외이사수)	3명 (0명)
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	10 억원

[별첨 5]

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

회사는 회사의 경영,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아래의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.

- (1) 부여대상 : 임직원
- (2) 부여기준일 : 2024년 3월 29일
- (3) 행사기간 : 2026년 3월 29일 ~ 2031년 3월 28일
- (4) 부여방법 : 신주발행교부방식
- (5) 부여주식의 종류 : 기명식보통주(1주당 액면금액 100원)
- (6)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
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무상증자, 주식배당,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, 주식병합, 합병, 액면분할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부여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로 조정될 수 있음
- (7) 부여대상(상세) 및 부여가격 : 아래표 참조

구분	이름	직위	수량	행사가격
1	전상현	직원	1,000 주	2,460원
2	이하은	직원	2,100 주	
합계			3,100 주	

[별첨 6]

위임장

주식회사 엘립스진단 귀중

수임인 성명 :
주민등록번호 :
주소 :

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24년 03월 29일에 개최하는 (주)엘립스진단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찬부의 표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위임합니다.

부 의 안 건		찬 성	반 대
제 1 호 의안	제3기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(안)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		
제 2 호 의안	정관 일부 변경의 건		
제 3 호 의안	사내이사 신익수 중임의 건		
제 4 호 의안	이사보수지급한도 승인의 건		
제 5 호 의안	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		

(의안의 찬부표시는 해당 칸에 “O” 혹은 “V” 하여 주십시오.)

2024년 월 일

주주명

(인감날인)

위 인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1부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) 를 첨부합니다.